

동물등록제에서 동물병원의 역할

이상혁

농림수산식품검역검사본부
동물보호과장/기술서기관
lsh68@korea.kr



제도 도입 취지

몇 년 전부터 경기, 부산, 인천,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었던 동물등록제가 올해부터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구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2008년 경기도 성남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12년에는 경기, 부산, 인천 등 53개 시·군·구까지 확대 실시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첫째 키우던 개를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찾아주어 동물은 물론 주인이 겪는 당혹감 또는 상실감을 덜어주는 데 있다. 둘째 주인에게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는데 있다. 이 제도가 잘 시행된다면 동물의 보호비용 절감과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및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 기능을 살릴 수도 있다.

대상동물 및 등록방법

등록대상 동물은 월령 3개월 이상의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해당된다. 등록은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동물대행기관을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등록신청하면 된다. 등록 방법은 3가지(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단체 또는 협회, 대학 및 지자체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의견이 달랐다. 동물보호단체의 경우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기술에 대해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반대의견을 했고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일부 지자체 및 대학에서는 인식표 또는 마이크로칩 기술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 중 내장형 마이크로칩 기술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비용은 등록방법에 따라 1~2만원 정도이다. 각 지자체별로 시각장애인 보조견, 유기견, 중성화수술을 한 개, 3두이상 등록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반액 또는 전액 감면하는 사항이 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되어 코팅된 쌀알 만한 크기이고,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동물등록을 위하여 마이크로칩 이식을 안전하게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해 가을, 소유자의 내장형 마이크로칩 기술의 부작용 우려가 심해지자 정부는 부작용 사례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시범실시 지역에서 180,201마리 시술 결과 14건에서 시술부위에 염증 등 부작용이 발생(농식품부, '12.8월 기준)하였는데 발생률(0.008%)은 매우 낮았으며 이 중에서도 가벼운 부종이 대부분(71%)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소유자는 동물등록 방법을 선택 시 수의사에 설명에 의하여 좌우 되므로 동물병원 수의사들은 기존 고객에게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으면 한다.

등록제도 관리

정부에서는 반려견의 등록정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동물을 등록한 소유자는 간단한 회원가입을 통하여 본인의 동물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또한 유기동물은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동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소유자를 찾을 수 있다.

동물등록제는 사람과 반려견과의 사랑의 끈이라고 볼 수 있다. 2008년부터 등록제를 실시해 온 성남시의 경우 등록제를 실시한 이후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은 비율이 4배 정도 증가하였다. 올해부터는 동물등록 비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반환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6월까지의 동물등록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7월부터는 단속을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단속을 하고, 1차 위반시

경고, 2차 20만원, 3차 위반시에는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13년 1월에 약 2만 6천건의 반려견을 등록하였으며 이 중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43%,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48%, 인식표는 9%를 차지한다. 전국 동물등록대상 동물을 400만두로 가정할 때 약 6%정도 동물등록이 된 것이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 소유자와의 접점이 되는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이 제도에 얼마나 관심을 쏟느냐에 따라 동물등록제의 모든 성패가 좌우된다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향후 정부에서도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동물등록제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일선 수의사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동물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별표 1】

□ 등록제 시범사업 시행전 · 후 비교 · 분석 (성남시 사례)

○ 연도별 비교 (‘08.10월부터 동물등록제 시범시행)

- 시행 전에 비해 유기견의 반환율이 약 4배 정도 상승

년 도	계(마리)	반 환	분 양	기 증	안락 · 자연사	보호중
2008	1,590	76(4.8%)	700(44.0)	67(4.2)	713(44.8)	43(2.1)
2009	1,598	159(9.9)	765(47.9)	-	632(39.5)	42(2.6)
2010	1,338	224(16.7)	527(39.4)	-	587(43.9)	-

* 전국 유기동물(개, 고양이 등) 발생수(‘09): 82,658두, 반환 5,076두(6.1%)

○ 등록과 미등록 유기견의 소유자 반환율

- 등록된 동물(개)의 경우 반환율이 95.1%에 달하고 평균 보호기간도 1일 미만에 그쳐 보호비용 절감 가능

년 도	유기견 발생두수	등록동물		미등록 동물	
		발생수	반환수	발생수	반환수
2009	1,598	61	58(95.1%)	1,537	101(6.6%)

【별표 2】

□ 동물용 마이크로칩 종류

번호	품목명	업체명
1	백홈 마이크로칩(Backhome Microchip)	(주)버박코리아
3	아비드프렌드칩(Avid friendchip identification system)	성보사이언스텍
4	에이지 아이디 칩(Cannula ID K162)	(주)고려비엔피
6	동물용RFID트랜스폰더(generic bio thermo assembly)	인투칩
7	동물주입형 RFID 트랜스폰더(칩)(형명ISO-Vetchip, 형식:X2O-SS2121)	루비시스
8	동물주입형 RFID트랜스폰더 (칩) 형명ISO-PETCHIP,형식X2O-FFR0101	씨엘에이 인터내셔널
9	마이크로 Tag CRC -100	중앙아이엔티(주)
10	동물주입형 RFID 트랜스폰더(칩)(Micro-Vetchip)	(주)한맥ENG
11	Trovan implantable transponder(ID-162)	이아이코리아
12	RFID 마이크로트랜스폰더(GENERIC SYRINGE ASSY(TX1440B10S))	인투칩
13	동물주입형RFID트랜스폰더(칩)(IPET-001)	아이페티잉(주)
14	동물 주입형 RFID트랜스폰더(칩)(X2O-SP7706)	큐찬스(주)
15	알플렉스 동물 주입형 RFID트랜스폰더(Allflex transponder)	(주)NH무역
16	동물주입형 RFID트랜스폰더(칩)(PET GUARDER)	태창산업(주)
17	동물 전자인식장치(KAML8506)	태창산업(주)
18	동물 전자인식장치(DS Gun-ID 001)	태창산업(주)
19	동물 전자적 개체인식장치(Back-Home Biotech Implanter)	(주)버박코리아
20	동물용 무선개체식별장치(SLE-100)	(주)에스아이티 코리아
21	동물 주입형 RFID트랜스폰더(칩)(X2O-8808)	큐찬스(주)
22	백홈 바이오글라스 마이크로칩(Backhome Bioglass Implanter)	(주)버박코리아
23	동물 주입형 RFID 트랜스폰더(칩)(IPET-003)	아이페티잉(주)
24	동물 주입형 RFID트랜스폰더(칩)(X2O-SP8808)	큐찬스(주)

【별표 3】

□ 연도별 동물용 마이크로칩 부작용 신고현황

(단위 : 건)

년도	체내이동	감염	부종	육아증	종양	계
'08						0
'09			2			2
'10			3			3
'11		1	1	1	1(양성)	4
'12	2		3			4
합계	2	1	9	1	1(양성)	14

* 시범실시 지역에서 180,201마리 시술 결과 14건에서 시술부위에 염증 등 부작용 발생(농식품부, '12.8월 기준)

- 부작용 발생률(0.008%) 이 매우 낮으며 부종 71%임

□ 영국의 마이크로칩 시술 부작용 발생 현황

(microchipping of animals,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09.10.2)

	인식실패 (failed)	감염	탈모	없어짐 (lost)	이동	부종	종양	기타	총계
'96~'04	28	12	1	59	155	11	1	3	270
'05	2	1		7	27		1		38
'06	1	5		3	12	8		3	32
'07	5	1		3	16	3		1	29
'08					16	1		1	18
'09		1			3				4
합계	36	20	1	72	229	23	2	8	391

* 마이크로칩 시술(370만두)에 대한 부작용 발생(영국소동물수의사협회, '09.9월)- 이동, 인식실패 68%, 감염, 부종11%

【별표 4】

□ 해외의 동물등록제

구분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만	싱가폴	뉴질랜드 (waitakere city)	일본
담당		직할시, 현(시) 주관기관	CAWC (The Centre for Animal Welfare and Control)	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	Municipal office
대상	개	개	개	개	개
등록시기		4개월	3개월	3개월	90일령
갱신	매년	변경사항 발생 시	매년	매년	매년
인식방법	마이크로칩 / 인식표(tag)	마이크로칩	마이크로칩/ 인식표(tag)	마이크로칩	인식표 (tag)
수수료	-일반동물 : \$26	-일반동물 : 1,000원 (한화 : 약37,000원)	-일반동물 : \$70(암컷) \$14(수컷)	-일반동물 : \$141	-일반동물 : ¥3,000
	-중성화동물 : \$14	-중성화동물 : 500원 (한화 : 약18,500원)	- 중성화 암컷 : \$14 *3마리 초과시 추가 허가비용 부과 : \$175	-중성화동물 : \$102 -맹인안내견 등 : \$4.5 *저소득층 수수료 감면 : \$72	

【별표 5】

□ 연도별 동물등록 현황

(단위 : 마리)

시행지역	'08	'09	'10	'11	'12	'13.1월	합계
서울	-	-	-	-	77	16,141	16,218
부산	-	46,081	5,951	3,091	2,918	1,248	59,289
대구	-	-	-	-	-	4,504	4,504
경기	5,540	41,729	29,432	22,360	15,483	4,566	119,110
인천	-	1,854	29,624	3,708	2,106	875	38,167
광주						813	813
대전		241	94	78	11	66	490
울산						1,281	1,281
제주	-	5,266	200	128	88	65	5,747
기타	-	-	187	244	37	188	656
계	5,540	95,171	65,488	29,609	20,720	29,747	246,275

* 동물등록방법 : 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마이크로칩, 인식표

【별표 6】

□ 동물등록제 10문 10답

1. 이미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시술된 반려견에 대하여 등록신청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의 제2호나목의 규격에 맞는 번호를 가진 무선식별장치로 시술된 반려견(외국에서 등록된 개 포함)은 동 무선식별장치를 사용하여 동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의 규격

- 총 15자리(국가코드 3자리 410 + 개체식별코드 12)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인식표로 동물 등록을 할 경우에 도 반려견을 직접 데리고 병원을 방문하여야 하나요?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8호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정보 확인을 위하여 소유자는 반드시 반려견을 데리고 동물대행기관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3. 동물등록한 개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변경신고 시 동물을 데리고 가야 하나요?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유자가 등록사항을 변경 신고할 경우에는 직접 시·군·구청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물을 동반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유자 전화번호,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등록대상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소유자가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통하여 직접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동물등록한 개의 소유자는 동물등록증을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하며, 우편 발송 또는 동물대행기관을 통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동물 소유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고 직접 동물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도 되나요?

☞ 관련 규정상 동물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타 지역 거주민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을 처리하고 동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6. 동물 소유자가 인식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인식표를 직접 부착해 주어야 하나요? 인식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나요?

☞ 동물 소유자가 인식표로 동물 등록하는 경우에는 인식표를 소유자가 지참하여야 하며, 등록신청 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자동 부여된 동물등록번호를 소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동물 소유자는 인식표에 성함,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동물을 데리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7.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광견병 예방 접종 기록시 동물 등록을 하고 난후 접종한 내용부터 기재를 하는 것인지 등록전에 접종한 내용도 기재할 해도 되나요?

☞ 광견병 예방접종 기록에 대하여는 동물 등록한 동물병원에 관계없이 동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일자별로 접종 기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전 기록도 있는 경우에도 기재할 수 있으며 기재내용은 누적 관리됩니다.

8.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가 진료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방문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동물소유자에게 동물등록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등록방법을 결정하여 다시 한번 동물병원을 방문하도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동물등록을 안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 2013년 상반기는 계도기간으로 적극적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2013년 하반기부터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동물등록여부 등의 방법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은 등록을 인한 동물 소유자에게 등록을 홍보하고 권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10. 동물등록업무를 하는 중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동물등록제에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디에 하나요?

☞ 동물등록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보호과(031-467-1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